

변경내용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61234
A	62973
C1	45224
C2	61357

2. 주요 변경 내용 :

① 규약

- class (A) 판매회사 보수인하 (연 0.90%→연 0.60%)
- 신탁업자 보수인하 (연 0.05%→연 0.04%)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 9. 28 시행)

② 투자설명서

- class (A) 판매회사 보수인하 및 신탁업자 보수인하

구분	종류	변경전	변경후
판매회사 보수율	class A	연 0.90%	연 0.60%
신탁업자 보수율	-	연 0.05%	연 0.04%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 9. 28 시행)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③ 간이투자설명서

- class (A) 판매회사 보수인하 및 신탁업자 보수인하

구분	종류	변경전	변경후
판매회사 보수율	class A	연 0.90%	연 0.60%
신탁업자 보수율	-	연 0.05%	연 0.04%

- 기준일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3. 변경 대상 서류 : 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4. 변경시행일 : 2018.11.28.

[규약변경대비표]

가. 정정 정오표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5 조 (자산운용지시 등)	<p>①(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으로</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 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④(생략)</p>	<p>①(좌동)</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 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④(좌동)</p>
제39조 (보수)	<p>①~②<생략></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p>1. Class A 수익증권 가. <생략>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u>9.0</u>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u>0.5</u> 라. < 생략 ></p>	<p>①~②<좌동></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p>1. Class A 수익증권 가. <좌동>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u>6.0</u>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u>0.4</u> 라. <좌동></p>

	<p>2. Class C1 수익증권 가. ~나. <생략> 다. <u>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5</u> 라. <생략></p> <p>3. Class C1 수익증권 가. ~나. <생략> 다. <u>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5</u> 라. <생략></p>	<p>2. Class C1 수익증권 가. ~나. <좌동> 다. <u>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u> 라. <좌동></p> <p>3. Class C1 수익증권 가. ~나. <좌동> 다. <u>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u> 라. <좌동></p>
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p>①(생략)</p> <p>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u>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③ <u>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4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u></p> <p>④ (생략)</p>	<p>①(좌동)</p> <p>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u>다만, 법 제 6 조 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③<삭제></p> <p>③ (항순연)</p>
부 칙	<신 설>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8 년 11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가. 정정 정오표

항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I. 집합투자기구 개요 보수	class (A) 판매회사 보수인하, 신탁업자 보수인하	- <u>판매회사 보수율 (class A) : 연 0.90%</u> - <u>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u>	- <u>판매회사 보수율 (class A) : 연 0.60%</u> - <u>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u>
II. 집합투자기구 투자 정보 3. 운용전문인력 4. 투자실적	업데이트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 한 사항	업데이트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class (A) 판매회사 보수인하, 신탁업자 보수인하	- <u>판매회사 보수율 (class A) : 연 0.90%</u> - <u>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u>	- <u>판매회사 보수율 (class A) : 연 0.60%</u> - <u>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u>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 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 의무해지	자본시장 법 및 시 행령 개정 사항 반영 (2018. 9. 28 시행)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 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 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 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 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 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 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

		<p>소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u>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u></p>	<p>소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u>다만, 법 제 6 조 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u></p>
<p>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p>	업데이트	-	<p>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p>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가. 정정 정오표

항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 개요 보수	class (A) 판매회사 보수인하, 신탁업자 보수인하	- <u>판매회사 보수율 (class A) : 연 0.90%</u> - <u>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u>	- <u>판매회사 보수율 (class A) : 연 0.60%</u> - <u>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u>
II. 집합투자기구 투자 정보 3. 운용전문인력 4. 투자실적	업데이트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